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라 한다.(개정 2012.5.17 · 2012.11.16)

제3조(위치) 본 대학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에 위치한다.(개정 2000.3.22 · 2014.4.23 · 2014.11.19)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6.15 · 2003.11.10 · 2004.12.1 · 2006.2.7 · 2008.2.11 · 2009.2.10 · 2009.12.23 · 2011.2.25 · 2012.2.28 · 2012.11.16 · 2013.9.3 · 2015.3.31 · 2016.2.27 · 2016.10.10 · 2017.5.8 · 2018.1.31 · 2018.3.22 · 2018.5.3 · 2019.5.3)

학과명	학제	주간	야간	학과명	학제	주간	야간
간호학과	4	87		에너지전기과	2	40	
방사선과	3	40		자동차과	2	70	
응급구조과	3	30		컴퓨터응용기계과	2	63	
임상병리과	3	40		건설정보부사관과	2	30	
작업치료과	3	50		정보통신부사관과	2	30	
치기공과	3	30		경찰행정과	2	56	
치위생과	3	30		복지행정과	2		30
보건행정과	3	34		사회복지과	2	40	
언어재활보청기과	3	30		보건보육청소년과	2	30	
의료재활과학과	3	30		창업경영과	2		30
바이오생명제약과	2	62		스포츠건강관리과	2	40	
호텔제과음료과	2	30		태권도외교과	2	40	
반도체전자과	2	100		합 계		1,032	60

제4조의2(폐지학과) ①본 대학에 설치한 학과의 당해 연도 신입생 충원이 모집정원 30명 이하는 21명 이하, 모집정원 31명 이상은 23명 이하인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과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4.12.1 · 2005.3.30 · 2008.2.11 · 2012.7.19)

②학과폐지에 관한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2.11)

③ (삭제 2008.2.11)

④ (삭제 2008.2.11)

⑤ (삭제 2008.2.11)

⑥ (삭제 2008.2.11.)

제4조의3(정원조정) ①학과의 정원은 대·내외 환경변화, 지역인력 수요의 변화, 교육정책의 변화, 대학의 정책적 목표, 학과 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②정원 조정의 주무부처는 교무처로 한다.

③학과의 정원 조정 시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해당 학과의 교수 및 재학생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정원 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2.)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개정 2002.6.15 · 2013.9.3)

②간호학과와 의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의료재활과학과, 언어재활보청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02.6.15)(개정 2003.11.10 · 2004.12.1 · 2006.2.7 · 2008.2.11 · 2011.2.25 · 2013.9.3 · 2015.3.31)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2년 이상, 3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1년 이상으로 하 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신설 2013.9.3)

제6조(재학연한) 본 대학은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기의 수업은 4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개정 2009.12.23. · 2017.3.16)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대학의 실무교육 강화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 학기를 분할하여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학생 취업·진로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실무학기제의 운영에 대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4.3.6)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2.7)

제10조(휴업일) ①정기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6.15)

1. 삭제

2. 삭제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법정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개정 2014.11.19.)

6. 근로자의 날(신설 2011.2.25)

②하계방학, 동계방학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2.6.15)

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시간제등록·전공심화과정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시간제등록, 전공심화과정 포함) 시기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6.2.7 · 2008.2.11)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총장이 요구하는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 및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4. 출신학교장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신학교의 내신성적, 종합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 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서는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도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2.11)

제14조의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의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학과별 고사(면접·구술, 필답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1)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08.2.11)

제15조의2(2중학적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6조(편입학) ①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복무 중 폐과된 학과의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과의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 대학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에 특별 생으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12.1)

③외국교육기관 또는 협력대학 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학생은 본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04.12.1)

④편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1)

제16조의2(전과) ①전과[전입/전출](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②전과는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30%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2.6.15. · 2003.11.10 · 2004.12.1 · 2006.2.7 · 2008.2.11 · 2011.2.25 · 2013.1.21 · 2014.11.19.)

③1학년 2학기 초에는 전체학과로 허가하며, 2학년 1학기 초에는 동일계에 한 한다. 다만, 학과의 폐지로 인하여 소속 학과로의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제와 계열 구분 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19.)

④보건계열의 간호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언어재활보청기과, 의료재활과학과에 대한 전과(전입/전출)는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3항 단서 조항의 경우와 2년제 학과에서 보건행정과, 언어재활보청기과, 의료재활과학과에 한하여 전입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19.)(개정 2015.3.31.)

⑤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 필수과목인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1학년 2학기 초에 전과가 허가된 자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2학년 1학기 초에 전과한 자는 당해 전입학과의 최저 전공요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 전공요구학점에서 예외로 한다.)(개정 2009.2.10 · 2014.11.19.)

⑥기타 전과기준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19.)

⑦학과의 폐과로 인하여 소속 학과로의 복학이 불가능하여 전과를 할 경우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2.11 · 2014.11.19.)

제17조(재입학) ①자퇴나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6.15. · 2013.9.3 · 2014.11.19.)

②다음의 각 호 해당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 제적자
2. 성행 불량자
3. (삭제 2013.9.3)
4. 이중학적 보유자

③교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로 재입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신설 2002.6.15.)(개정 2008.2.11 · 2014.11.19.)

④자퇴 또는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 학과의 연속성을 검토하여 재입학 당해 연도에 개설된 학과에 재입학할 수 있으며 재입학 학과의 학제에 따른다.(신설 2002.6.15)(개정 2004.12.1)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개정 2006.2.7)

제19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 및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연서로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4.4.23. · 2016.10.10.)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08.2.11 · 2011.2.25)

④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⑤창업휴학의 경우, 2학기이상 이수하고 동시에 대학 또는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관련 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휴학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4.23.)

⑥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휴학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6.10.10.)

제19조의2(복학) ①일반휴학, 질병휴학, 병역의무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후, 복학할 경우에 학제개편으로 소속학과가 3·4년제로 개편되었을 경우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4년제로 편제할 수 있다.(신설 2002.6.15.)(개정 2013.9.3. · 2014.2.23. · 2016.10.10.)

②기타 복학에 관한 일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6.15)

제20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1호, 7호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학기 수업일수의 1/4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6.2.7)
2. (삭제 2006.2.7)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삭제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문교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준은 교양교과 10-25%, 전문교과 75-90%로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일정비율은 실험·실습으로 하되,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계열은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2.7 · 2008.2.11 · 2014.4.23)

②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하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2.11. · 2011.2.25. · 2013.1.21. · 2013.9.3. · 2014.11.19.)

④외국인 유학생 별도반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2.7)

⑤1+3+1연계교육 우선선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에 대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3)

⑥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발(개편)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4.23.)

⑦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단위 모듈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7.3.16.)

⑧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개방형 융합교육(교과·비교과 융합, 옴니버스 융합, 지역사회서비스러닝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3.)

제23조(비정규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매 학년도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1.2.25 · 2013.7.24)

제23조의2(시간제등록)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매 학기 시간제 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06.2.7)

② (삭제 2004.12.1)

③본 대학에서 해당과목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점인정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④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별로 선발하되, 통합반과 별도반 모집인원을 각 각 당해연도 총입학정원 100분의 10이내로 한다.(신설 2011.4.8)(개정 2012.2.28)

⑤기타 시간제 등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4.8)

제23조의3(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2년제, 3년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학력 취득 후 산업체경력 9개월 이상인 자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2.6.15 · 2013.1.21. · 2013.9.3)

②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

③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학점인정) ①전문대학 동등 이상의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개설된 교육과정의 교양과목에 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2.11. · 2014.4.23. · 2015.10.8. · 2017.5.8.)

1.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적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학점인정허가원을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과에 제출한다.(신설 2014.4.23)

2. 최대인정학점은 2년제의 경우 최대 7학점, 3년제의 경우 최대 11학점, 4년제의 경우 최대 13학점(간호학과 2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3.)(개정 2019.2.7.)

②본 대학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은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본 대학 또는 본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재취업관련 학점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 대학 해당학과/전공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99.5.19)

④고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9.1)(개정 2011.2.25)

⑤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 대학 해당학과/전공에 입학한 경우에는 유사 혹은 동일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5.19.)(개정 2011.2.25)

⑥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해외인턴십 기관을 포함한다)등에서 교육, 연구, 실습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관련성을 검토한 후,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2.25)(개정 2013.1.21 · 2014.4.23)

⑦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우리대학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2.25)

⑧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시작품을 평가하여,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까지 창업실습교과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3)

⑨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타 대학의 창업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년 6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4.4.23)

⑩산업체에 조기취업하여 “조기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24조(수강신청범위)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10)

⑪기타 학점인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2.25)(항번호 변경 2014.4.23. · 2016.11.10)

제23조의5(공개강좌) ①본 대학에 직무·교양 또는 연구·기타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제목·기간·수강자격·정원·장소·기타 공개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공개강좌의 수강희망자는 수시로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④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6(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수여) ①본 대학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에 의하여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 120학점 이상,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점이 인정된 특별과정, 시간제등록제에서 동령 제16조 제2항에 정한 3년제는 65학점 이상, 2년제는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2년제는 교양 15학점,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이상을, 3년제는 교양 21학점, 전공 54학점, 일반 4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여건에 문제가 없는 자

3. 본 대학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1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에 의하여 학위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학점의 관리에 학위수여 후 학점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본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13.7.24)

③본 대학의 장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 대학 평생교육원에 제출한다.(개정 2013.7.24)
2. 본 대학 평생교육원은 학위수여심사를 통해 학위 수여 예정자 명단(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을 담은 학칙 사본, 학위증 서식 첨부)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04.12.1)(개정 2013.7.24)

제23조의7(실습학기제) ①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실습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12.1)

제23조의8(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운영)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반 수업단위의 운영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2.11)(개정 2009.2.10 · 2011.2.25 · 2011.5.4)

②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 할 수 있다.(신설 2011.2.25)

제23조의9(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①계약학과에 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 및 회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2.11)

제23조의10(계약학과의 정원) ①제23조의9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2.25 · 2011.4.8 · 2013.1.21 · 2013.9.3 · 2019.2.7.)

계약학과명	수업연한	입학정원	비고
전자과	2	35	고속련 일학습병행 학위연계형
기계과	2	20	

②제23조의9 제1항 제1호 및 2호에 의한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2.25 · 2019.2.7.)

(본조 신설 2008.2.11.)

제23조의11(계약학과의 납입금) 계약학과 운영 필요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전체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8.2.11.)(개정 2019.2.7.)

제23조의12(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2.11.)(개정 2014.3.6.)

제23조의13(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의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계약학과 학생의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 유지,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개정 2019.2.7.)

(본조 신설 2011.2.25.)

제23조의14(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

다.(개정 2013.9.3)

②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년제 학과는 74학점, 3년제 학과는 111학점,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2.11. · 2013.9.3 · 2019.2.7.)

③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은 2년제 학과는 44학점, 3년제 학과는 67학점, 4년제 학과 78학점 이상으로 하며(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로 한다.), 전공 교과목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02.6.15. · 2005.1.6. · 2008.2.11. · 2009.2.10. · 2013.9.3. · 2018.1.31 · 2019.2.7.)

④교양교과목의 경우 최소 이수학점제를 적용하여 2년제 학과는 7학점, 3년제 학과는 11학점, 4년제 학과는 13학점(간호학과 2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양교과목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단, 산업체 별도반, 계약학과, 야간학과 및 외국인유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2.11)(개정 2009.2.10. · 2013.9.3 · 2019.2.7.)

⑤학생은 매학기 14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3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8.2.11. · 2011.2.25. · 2013.9.3. · 2014.11.19. · 2019.2.7.)

⑥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제 현장실습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2.11. · 2014.11.19.)

⑦제22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에서 10학점까지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현장실습 학점은 P(불계)로 인정한다.(개정 1999.5.19. · 2008.2.11. · 2013.9.3. · 2016.8.1.)

⑧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 학기 8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8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제25조(수업)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하고 08:00시~23:00시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목의 수업시간은 산업체의 근무 종료시간을 고려,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2.7.)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해당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자격증 취득 학생에게는 자격증관련 인정교과목에 대해 P(불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제26조의2(NCS 기반 운영 교과목의 평가) NCS 기반 교과목의 평가는 평가계획서에 의거한 진단평가, 직무 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2.3)

제27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실습, 어학연수,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대학 동등 이상의 대학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교양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 교육과정상 교양과목 중 유사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2년제의 경우 최대 7학점, 3년제의 경우 최대 11학점, 4년제의 경우 최대 13학점(간호학과 25학점)까지 교양학점을 인정하며 인정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2.11. · 2013.9.3 · 2019.2.7.)

③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를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진급인원) 2학년 또는 3학년,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6.15. · 2013.9.3)

제2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9.3)

1.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신설 2013.9.3.)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신설 2013.9.3.)
3. 학기당 2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신설 2013.9.3.)(개정 2019.2.7.)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신설 2013.9.3.)
5. 분할 납부할 등록금을 기말시험 시작 전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9.3.)(개정 2019.2.7.)

제30조(경고) 성적평가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3.9.3.)

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의 수료 : 37 학점 이상(개정 2019.2.7.)
2. 2학년의 수료 : 74 학점 이상(개정 2019.2.7.)
3. 3학년의 수료 : 111학점(신설 2002.6.15)(개정 2019.2.7.)
4. 4년제 학과의 수료 학점은 1학년 33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9.3.)(개정 2016.4.5. · 2019.2.7.)
5.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조항변경 2013.9.3.)

③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3.)

④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2년제는 74학점, 3년제는 111학점, 4년제는 13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년 과정은 20학점, 2년 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필수교과 및 전공필수교과를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신설 2013.9.3.)(개정 2019.2.7.)

제31조의2(학위의 종류) ①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3.9.3.)

제31조의3(명예학위증서 수여) ①본 대학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본 대학 발전과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4. 재학 중 사망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되었던 자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13.9.3)

제32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 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 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①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37조(학생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적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의2(성희롱·성폭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8.17)(개정 2012.5.17·2012.11.16)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 첨부 및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2조(결석) 학생이 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경과할 때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6.2.7)

1.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한 자(개정 2006.2.7)
2. (삭제 2006.2.7)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납입금

제45조(납입금) ①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기에 소정 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2.25 · 2013.7.24)

③납부한 수업료 등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 한다.(개정 2014.11.19.)

제46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등록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2.25)

제11장 장학금

제47조(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학과장의 추천 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2.7. · 2008.2.11. · 2011.2.25. · 2014.3.6)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생활이 극빈한 자

2.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장 대학평의원회·교수회 및 학칙 제 개정 절차(개정 2005.3.18·2008.2.11)

제48조(교수회 구성) ①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개정 2005.3.18. · 2008.2.11. · 2013.1.21)

② (삭제 2008.2.11)

제49조(교수회 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은 총장이 되며,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3.18)

②교수회는 제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신설 2005.3.18)

③ (삭제 2008.2.11)

④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3.18 · 2008.2.11)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의2에 한 한다.(개정 2008.2.11)

2. (삭제 2008.2.11)

3. (삭제 2008.2.11)

4. (삭제 2008.2.11)

5. (삭제 2008.2.11)

제49조의2(교무위원회) ①본 대학의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11)

② (삭제 2008.2.11)

제49조의3(교무위원회 구성) ①본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당연직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2.11)(개정 2013.9.3)

②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신설 2008.2.11)(개정 2013.9.3.)

1. 당연직 위원 : 당연직 위원 : 총장, 부총장, 처장(단장, 원장 포함),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장(신설 2013.9.3.)(개정 2014.11.19. · 2017.5.8.)

2. 선임직 위원 : 전임교원 중에서 계열, 직명, 성별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신설 2013.9.3.)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신설 2013.9.3)

제49조의4(교무위원회 심의사항) ①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2. 학과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학칙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3.6.)

6. (삭제 2014.3.6.)

7. 교육만족도 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연 1회 이상)(신설 2013.9.3.)
8. 학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연 1회 이상)(신설 2013.9.3.)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호번호 변경 2013.9.3.)
- ②교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8.2.11)
- 제49조의5(제위원회) ①총장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3.18)(본조 개정 2008.2.11)
- 제49조의6(학칙제정 및 개정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3.18)(본조 개정 2008.2.11)
- 제49조의7(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5.3.18)(본조 개정 2008.2.11)(개정 2011.4.8)
- 제49조의8(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들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3.18)(본조 개정 2008.2.11)
- 제49조의9(심의 및 공포) ①사전예고 절차를 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08.2.11)
- ② (삭제 2013.7.24)
- 제49조의10(대학평의위원회)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본조 신설 2008.2.11)
- 제49조의11(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①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8.2.11)

제13장 직제

- 제50조(교직원) ①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개정 2006.2.7 · 2013.1.21)
- ②본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신설 2006.2.7)
-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2.7)
- 제51조(직제) ①본 대학에 총장 직속의 혁신지원사업단,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을 두고 교무, 학생, 입학, 기획, 총무, 산학 등 행정사무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설기관으로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창업지원단을 둔다.(개정 2001.11.16. · 2003.11.10. · 2004.8.1. · 2005.3.18. · 2008.2.11. · 2011.5.4. · 2014.11.19. · 2017.5.8. · 2019.5.3.)
- ②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장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각 처의 명칭 및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

제14장 부속기관

제52조(부속기관) (삭제 1999.5.19)

제15장 부설기관

제53조(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산학협력단(개정 2000.3.22)

2. 평생교육원(개정 2001.2.7)
3. (삭제 2011.2.25)
4. (삭제 2011.2.25)
5. 원격평생교육원(신설 2011.5.4.)
6. 창업지원단(신설 2019.5.3.)

②제1항 각 호에 필요한 부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보칙

제54조(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55조(산업체위탁교육) ①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8.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경비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위탁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3년제 학과 위탁생의 교육연한은 산업체와 협의하여 2년 또는 3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4.12.1)

⑤산업체 위탁교육 별도반 수업단위 운영은 15명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5.3.18.)(개정 2008.2.11)

⑥산업체위탁교육 별도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산업체위탁교육 별도반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별도반을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신설2015.3.31.)

⑦ 산업체위탁교육 별도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⑧ 산업체위탁교육 별도반 학생이 휴학 후 복학시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학칙의 부칙 경과규정 및 유사학과의 산업체위탁 여석 범위 내에서 복학을 허용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56조(재소자위탁교육)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행형 성적이 우수한 재소자중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자의 교육을 법무부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제55조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특별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1.2.7)

제17장 학교기업(신설 2004.9.1.)

제57조(학교기업 설치) (삭제 2013.1.21)

제58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삭제 2013.1.21)

제59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삭제 2013.1.21)

제18장 자체평가(신설 2009.12.23)

제60조(자체평가) ①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9.12.23.)

제19장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특별지원위원회(신설 2011.2.25)(개정 2011.5.4.·2013.9.3)

제61조(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2.25)(개정 2011.5.4. · 2013.9.3.)

제20장 도서관(신설 2016.4.5)

제62조(도서관) ①본 대학은 지원시설로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운영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4.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과이수단위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학칙은 시행당시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성적미취득 교과목에 대하여는 이수년도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 학과특성에 맞는 교양교과 및 전문교과를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②1993학년도 재학생중 학적변동이 없는 재학생은 학기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미취득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여가생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여가문화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재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금융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디자인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산업디자인과 주간으로 전과를 허용하되, 2002학년도 8월말까지 종전 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성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주성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은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전기·전자·통신계열에 소속된 10개 전공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산업전기전공, 자동제어전공, 전자재료응용전공, 전력전자전공을 전기계열로, 전자기기케드전공, 컴퓨터하드웨어응용전공을 전자계열로, 멀티미디어정보통신전공, 전파응용전공, 정보통신기기전공, 초고속통신전공을 정보통신계열로 분류하고, 그 계열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변경전)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후 소속 학과 및 전공으로 본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열/학과	전공	계열/학과	전공	
전기전자통신계열	전기전자소자	전기계열	전자재료응용	
	전파응용	정보통신계열	전파통신	
컴퓨터계열	컴퓨터응용기술	컴퓨터계열	전산정보시스템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정보	
여가문화과	레저댄스	실용댄스과	-	
	레크리에이션게임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이벤트과	-	
국제문화과	영미문화전공	영미문화과	-	
	중국문화전공	중국문화과	-	
산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	실내디자인과	-	
	시각전달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	
창작문화과	-	문예창작과	-	
영상문화과	-	사진영상디자인과	-	
기계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	

제4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중전의 금형기술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금형기술과 주간으로 전과를 허용하고, 2004년도 8월말까지 중전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중전의 아동문화과 야간의 아동미술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아동문화과로 전과를 허용하고, 2004년도 8월말까지 중전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전의 전기계열, 전자계열, 정보통신계열에 소속된 10개 전공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전기계열은 학과모집단위로, 전자계열은 디지털정보통신계열로, 정보통신계열은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계열로, 정보통신과(야간), 전자통신과(야간)은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계열(야간)으로 전자과(야간), 전자통신과(야간)은 디지털정보통신계열(야간)으로 분류하고 그 계열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중전(변경전)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후 소속 학과 및 전공으로 본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열/학과	전공	계열/학과	전공	
전기계열	산업전기전공	산업전기과	-	전공 통합
	자동제어전공	디지털정보제어과	-	
	전력전자전공		-	
	전자재료응용전공	전자재료응용과	-	
정보통신계열	정보통신기기전공	디지털정보통신계열	정보통신기기전공	
전자계열	컴퓨터하드웨어응용전공	디지털정보통신계열	컴퓨터통신전공	
전자과(야) 전자통신과(야)	-	디지털정보통신계열(야)	정보통신기기전공(야)	
정보통신과(야) 전자통신과(야)	-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계열(야)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전공(야)	
전기과(야)	-	산업전기과(야)	-	
금형기술과	-	캐드캠응용금형과	-	
건축시공과	-	건축공학과	-	
토목시공과	-	토목공학과	-	
음향전자기기 과	-	음향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전의 디지털정보통신계열,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계열, 컴퓨터계열, 디지털정보통신계열(야간),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계열(야간), 컴퓨터계열(야간)에 소속된 전공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계열을 학과모집단위로 분류하고 그 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중전(변경전)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후 소속학과 및 전공으로 본다. 다만, 건설재료공과 복학생은 건축과로 복학 할 수 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역/학과	전공	학과	
디지털정보통신계열	정보통신기기전공 정보통신기기전공(주/야) 컴퓨터통신전공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계열	멀티미디어정보통신전공(주/야) 초고속통신전공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주/야)	
	전과통신전공	정보전자과	
컴퓨터계열	네트워크프로그래밍전공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전공(주/야)	컴퓨터프로그래밍과(주/야)	
	인터넷정보전공(주/야)	인터넷가상현실과(주/야)	
컴퓨터계열	전산정보시스템전공	전자상거래과	학과통합
전자상거래과	-		
산업전기과(주/야)	-	전기과(주/야)	
전자재료응용과	-	전자신소재과	
공업경영과	-	산업시스템경영과	
카드응용금형과	-	카드응용설계과	
건설재료공과 토목공학과	-	토목과	학과통합
지방행정과 법률정보과	-	경찰행정과	학과통합
실용댄스과 레크리에이션이벤트과	-	여가레크리에이션과	학과통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카드응용설계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컴퓨터응용기계과 소속으로 본다.

②디지털정보제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정보미디어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전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후 소속학과 및 전공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디지털방송과	명칭변경
카드응용설계과	컴퓨터응용기계과	학과통합
디지털정보제어과 정보전자과	정보미디어과	학과통합
인터넷가상현실과	인터넷정보과	명칭변경
전자신소재과	신소재과	명칭변경
바이오과	바이오생명과	명칭변경
사진영상디자인과	사진예술과	명칭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이수단위에 따른 경과조치) 졸업에 필요한 최저전공이수학점은 2년제 학과는 48학점, 3년제 학과는 72학점으로 한다는 200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의료전기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②로봇완구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③전자상거래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④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인터넷만화과 소속으로 본다.

⑤신소재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⑥정보미디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⑦자동차과(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차서비스과 소속으로 본다.

제4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영상애니메이션	인터넷만화과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경영(주)	테크노정보과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경영(야)	산업경영과	명칭변경
의료정보	보건행정과	명칭변경
금융정보	경영과	학과통합
세무회계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복지과	명칭변경
영미문화	관광과	학과통합
중국문화		
사진예술과	웨딩이벤트과	명칭변경
골프경영	레저스포츠과	학과통합
레저스포츠		
귀금속세공디자인	귀금속공예과	명칭변경
바이오생명과	바이오생명과	계열변경(공학→자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등은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학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학칙의 제·개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의료전기전자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소방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본다.

②플라워아트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사진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③폐과 및 변경 학과의 복학생은 계열 구분 없이 전과를 허용하고, 학생이 복학/전과 학과에서 1학년부터

새로이 수강을 원할 경우 휴학이전에 등록하였던 학기만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며, 학제를 달리하는 경우 복학 학과의 학제에 따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디지털방송과	방송연기영상과
인터넷만화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자동차서비스과	자동차과(야)
테크노정보과(주)/산업경영과(야)	산업유통경영과(주/야)
경영과	세무과
	금융마케팅과(야)
관광과	관광항공서비스과
	중국어과
여가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복지과
웨딩이벤트과	사진디자인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6학년도 이전학생은 제23조의4(학점인정), 제24조(교과이수단위)의 제4항, 제27조(성적)의 제2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개정 학칙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학칙 제4조의2(폐지학과 및 전공)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수업연한)제2항, 제16조의2(전과), 제17조(재입학)제3항, 제22조(교육과정), 제23조의8(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제23조의9(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제23조의10(계약학과의 정원), 제23조의11(계약학과의 납입금), 제23조의12(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제57조(학교기업설치), 제58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은 2007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학과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학과로 본다.

폐지전 학과명	변경 학과명	비고
인터넷정보과	컴퓨터보육과	
게임디자인과	e-스포츠게임과	
세무과	금융마케팅과	
산업유통경영과	컴퓨터응용기계과	
경호비서과(야)	경호비서과(주)	
건강관리과	스포츠복지과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경찰행정과(야)	경찰행정과(주)	
실용음악과(야)	실용음악과(주)	

②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학과로 본다.

폐지전 학과명	변경 학과명	비고
컴퓨터보육과	인터넷쇼핑몰창업과	
건축과	국방건설과	
문예창작과	한중교류과 또는 복지계열	
정보전자통신과	반도체장비과 또는 유사계열	

제4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 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컴퓨터프로그래밍과	e-스포츠게임과 인터넷쇼핑몰창업과	명칭변경 및 학과분리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명칭변경 및 학과통합
사진디자인과		

②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아동문화과	아동복지과	명칭변경
중국어과	한중교류과	명칭변경
인터넷쇼핑몰창업과	인터넷쇼핑몰마케팅과	명칭변경
토목과(주)	국방건설과(주)	명칭변경
정보통신과	반도체전자과	명칭변경
바이오생명과	바이오생명제약과	명칭변경 및 학제변경
귀금속공예과	패션주얼리과	명칭변경

제5조(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4조 제4항의 규정은 2009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학과 소속으로 본다.

폐지전 학과명	변경 학과명	비고
관광항공서비스과	한중교류과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산업스포츠과	레저스포츠과	

제4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 후 학과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부동산과	부동산경제과	명칭변경
실내디자인과	인테리어모델링과	명칭변경
뷰티디자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학과통합
스타일리스트과		
스포츠복지과	사회복지과	학과통합
사회복지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학과 소속으로 본다.

폐지전 학과명	변경 학과명	비고
소방안전관리과	경찰행정과	
패션주얼리과	의기공과	
복지행정과(야간)	사회복지과(야간)	
부동산경제과(주간)	부동산경제과(야간)	
금융마케팅과(주간)	금융마케팅과(야간)	
컴퓨터응용기계과(야간)	컴퓨터응용기계과(주간)	
반도체전자과(야간)	반도체전자과(주간)	
방송연기영상과(야간)	방송연기영상과(주간)	

제3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고
청소년문화복지과	아동청소년문화복지과	학과통합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문화복지과	학과통합
부동산경제과	부동산과	명칭변경
음향과	음향제작과	명칭변경
국방건설과	건설정보부사관과	명칭변경
국방전자통신과	정보통신부사관과	명칭변경
경호비서과	경호무도과	명칭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도 8월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학과 소속으로 본다.

폐지전 학과명	변경 학과명	비고
음향제작과	언어청각보청과	

제3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계열)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계열)명	비고
경찰행정과	경찰소방행정과	명칭변경
금융마케팅과	금융보험부동산과	학과통합
부동산과		
사회복지과	복지계열	학과통합
아동청소년문화복지과		
한중교류과	중국비즈니스과	명칭변경
반도체장비과	반도체전자계열	학과통합
반도체전자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인테리어과	명칭변경
방송연기영상과	문화예술계열	학과통합
실용음악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년도 8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언어청각보청과	언어재활보청기과	명칭변경
반도체전자계열	반도체전자과	명칭변경
e스포츠게임과	컴퓨터게임과	명칭변경
복지계열(주)	사회복지과	명칭변경 및 학과분리
	청소년문화복지과	
복지계열(야)	복지행정과(야)	명칭변경
문화예술계열	공연예술과	명칭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성대학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주성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주성대학교 재학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도 8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학과 소속으로 본다.

② (삭제 2015.3.31.)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중국비즈니스과	경찰소방행정과	

제4조(학과명칭변경/학과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컴퓨터게임과	바이오정보과	명칭변경
의기공과	의료보장구과	명칭변경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뷰티코스메틱과	명칭변경
경호무도과	태권도외교과	학과통합

제5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학과명	학제	학과명	학제	
보건행정과	2	보건행정과	3	
의기공과	2	의료보장구과	3	
언어재활보청기과	2	언어재활보청기과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뷰티코스메틱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실용음악공연과 소속으로 본다.

②인터넷쇼핑몰마케팅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바이오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③자동차과(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차과(주) 소속으로 본다.

④산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경찰소방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⑤금융보험부동산과(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창업경영과(야) 소속으로 본다.

⑥인테리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재생에너지과 소속으로 본다.

⑦폐지학과의 복학생은 계열 구분 없이 전과를 허용하고, 학생이 복학/전과 학과에서 1학년부터 새로이 수업을 원할 경우 휴학 이전에 등록하였던 학기만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며, 학제를 달리하는 경우 복학 학과의 학제에 따른다. 다만, 보건계열의 3, 4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변경 전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년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표의 변경 후 학과 소속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경찰소방행정과	경찰행정과	명칭변경
레저스포츠과	스포츠건강관리과	명칭변경
바이오정보과	바이오의료정보과	명칭변경
의료보장구과	의료재활과학과	명칭변경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학칙의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한 소속학과로 본다.

② 폐지학과의 복학생이 복학/전입 학과에서 1학년부터 새로이 수강을 원할 경우 휴학 이전에 등록하였던 학기만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 할 기회를 부여하며, 학제를 달리하는 경우 복학/전입학과의 학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실용음악공연과의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8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스포츠건강관리과 소속으로 본다.

② 폐지학과의 복학생이 복학/전입 학과에서 1학년부터 새로이 수강을 원할 경우 휴학 이전에 등록하였던 학기만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 할 기회를 부여하며, 학제를 달리하는 경우 복학/전입학과의 학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 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경찰행정과	경찰행정과	학과통합
부서관과		
청소년문화복지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명칭변경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전기과	명칭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표의 변경 후 학과로 본다.

변경전 학과명	변경후 학과명	비 고
바이오생명제약과	바이오생명제약과	학과통합
바이오의료정보과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토목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건설정보부사관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학칙 제23조의10(계약학과의 정원), 제23조의11(계약학과의 납입금), 제23조의13(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제23조의14(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칙은 2019.2.7.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의4(학점인정), 제24조(교과이수단위), 제25조(수업), 제27조(성적), 제29조(성적의 취소) 및 제31조(졸업 및 수료)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기준 및 학점이수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졸업에 필요한 교양, 전공, 졸업학점 및 매학기 이수학점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다음의 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학제	교양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	이수학점(학기)
2년제	8	48	80	15~24학점
3년제	12	72	120	
4년제	20(간호25)	84	140	
학사학위전공심화	-	-	140	-

제3조(수료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 변경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1학년의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의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의 수료 : 120학점 이상
4. 4년제 학과의 수료 학점은 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 4학년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의 종류(신설 2013.9.3.)(개정 2015.3.31. · 2016.2.27. · 2018.1.31.)

계열	학과명	학위종별	계열	학과명	학위종별
자연 과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공학	반도체전자과	공학전문학사
	방사선과	보건전문학사		신재생에너지과	
	보건행정과			자동차과	
	응급구조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임상병리과			토목과	
	작업치료과		창업경영과	경영전문학사	
	치기공과		복지행정과	복지전문학사	
	치위생과		사회복지과		
	언어재활보청기과		아동보육청소년과		
	의료재활과학과		경찰행정과	행정전문학사	
	바이오생명제약과		생명과학전문학사	부서관과	부서관전문학사
	바이오의료정보과	생명정보전문학사	예체능	태권도외교과	체육전문학사
	호텔제과음료과	이학전문학사		스포츠건강관리과	
공학	건설정보부서관과	공학전문학사	28개 학과		
	정보통신부서관과				

[별표 2] 학위의 종류(신설 2015.3.31.)(개정 2016.2.27. · 2018.1.31.)

구분	학과명	학위종별	학과명	학위종별
학사학위전공심화	간호학과	간호학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사
	보건학과	보건학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5개 학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9.3.)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학과명 :
학위명 :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충북보과대(학)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3조 6의 규정에 의하여 OO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9.3.)

제 호

수료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 대학교 과 제 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3.9.3.)

